신지원

교 재 명	2026 물류관리사 벼락치기 핵심요약집
저 자	전표훈・변달수 편저
발 행 일	2026년 4월 10일

출간 이후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정오표를 안내 드립니다.
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, 해당 내용은 차기 인쇄 시 반영하여 수정 출간하겠습니다.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등록일	비고
361P 상단	**2. 물류터미널공사의 인가** **① 인가권자 및 인가절차** ㉠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 :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**시・도지사**의 공사시행인가(認可)를 받을 수 있다. 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: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・도지사**는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・도지사**는 ①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.	**2. 물류터미널공사의 인가** **① 인가권자 및 인가절차** ㉠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 :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**시・도지사 등**의 공사시행인가(認可)를 받을 수 있다. 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: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・도지사 등**은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・도지사 등**은 ①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.	2026-07-06	법 개정
383P 상단	TIP ▶ **운전경력 등의 요건**(시행규칙 제18조) 1.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. 18세 이상일 것	TIP ▶ **운전경력 등의 요건**(시행규칙 제18조) 1.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. 18세 이상일 것	2026-07-06	법 개정

	3.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. 다만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**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**	3. 운전경력이 2년 이상**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(각 목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)이 1년 이상일 것** **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** **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** **- 「병역법」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(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) 중 화물자동차 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**		
392P 하단	**1. 공영차고지의 개념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'시·도지사'라 한다)	**1. 공영차고지의 개념** ① 특별시장·**통합특별시장**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	2026-07-06	법 개정